

# 해외선진 감사기관 공동조사 결과보고서

2017. 7.



경제·인문사회연구회

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,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<b>1</b>                 | <b>출장 개요</b>        | 1  |
| <b>2</b>                 | <b>주요 일정</b>        | 2  |
| <b>3</b>                 | <b>방문조사 결과</b>      | 3  |
| 1. 국제성과감사센터(ICPA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1)                       | 회의 개요               | 3  |
| 2)                       | 성과감사 주요 내용          | 3  |
| 3)                       | 국제성과감사센터 주요 업무 및 역할 | 8  |
| 4)                       | 국제성과감사센터 방문 시사점     | 12 |
| 2. 국제통화기금(IMF)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1)                       | 회의 개요               | 15 |
| 2)                       | 국제통화기금 회의 내용        | 16 |
| 3)                       | 국제통화기금 내부감사실 방문 시사점 | 23 |
| 3. 뉴욕시 보건복지부(NYC, DOHMH)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1)                       | 회의 개요               | 26 |
| 2)                       | 뉴욕시 보건복지부 회의 내용     | 28 |
| 3)                       | 뉴욕시 보건복지부 방문 시사점    | 35 |
| 붙임 1. 기관방문 사전 질의사항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38 |
| 붙임 2. 회의시 기관별 발표자료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43 |
| 붙임 3. 출장결과 발표자료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78 |

## I 출장 개요

### □ 목 적

- 최근 정부는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등 반부패·청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
- 연구회는 출연(연)에 대한 사전예방 중심의 구조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부응
-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및 소관연구기관과 합동으로 해외선진 감사기관을 방문, 최신 감사기법·제도 등을 습득하기 위한 공동조사 추진

### □ 출장 기간

- 2017. 6. 20(화) ~ 6. 28(수), 7박 9일

### □ 방문 국가(도시)

- 미국(워싱턴 D.C., 뉴욕)

### □ 방문 기관

- 국제성과감사센터(ICPA)
- 국제통화기금(IMF) 독립평가실(IEO) 및 내부감사실(OIA)
- 뉴욕시 보건복지부 감사국(NYC, DOHMH)

### □ 출장자 : 총 11명

- 국무조정실(법무감사담당관실) 김양수 기획팀장
- 연구회 조원옥 감사부장, 이창준 감사담당
- 건축·에너지·KDI·대학원·농촌·보건·해양·형사(연) 감사부서장 8인

## 2

## 주요 일정

| 일 자              | 일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6. 20.(화)<br>워싱턴 | ○ 인천공항 출국 → 미국 워싱턴공항 도착<br>○ ICPA 방문 준비(질의자료 검토 등)                      | 출국           |
| 6. 21.(수)<br>워싱턴 | ○ ICPA 방문 및 전문가 교육·회의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관방문         |
| 6. 22.(목)<br>워싱턴 | ○ ICPA 회의 및 조사내용 디브리핑<br>○ IMF 방문 준비(질의자료 검토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
| 6. 23.(금)<br>워싱턴 | ○ IMF 방문 및 회의 진행<br>○ IMF 독립평가실(IEO) 및 내부감사실(OIA) 방문 및 회의               | 기관방문         |
| 6. 24.(토)<br>뉴욕  | ○ IMF 회의 및 조사내용 디브리핑<br>○ 워싱턴 → 뉴욕 이동(오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동<br>(현지항공) |
| 6. 25.(일)<br>뉴욕  | ○ NYC, DOHMH 방문 관련 사전 회의(뉴욕 컬럼비아대학교, 오후)<br>* DOHMH 감사관 참석              | 사전회의         |
| 6. 26.(월)<br>뉴욕  | ○ NYC, DOHMH방문 및 회의 진행<br>○ 출연(연) 감사기능 개선을 위한 선진감사기관 조사결과 종합<br>토론 및 논의 | 기관방문         |
| 6. 27.(화)<br>뉴욕  | ○ NYC, DOHMH 회의 및 조사내용 디브리핑<br>○ 뉴욕공항 출국 → 인천공항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내1박         |
| 6. 28.(수)<br>인천  | ○ 인천 도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귀국           |

### 3 방문조사 결과

#### 1. 국제성과감사센터(ICPA, International Center for Performance Auditing)

##### 1) 회의 개요

□ 일 시 : 6. 21.(수) 09:00~11:40

□ 장 소 : 국제성과감사센터(ICPA) 회의실 등

□ 참석자

- Mark Funkhouser, CEO, 국제성과감사센터(ICPA)
- 국무조정실(법무감사담당관실) 김양수 기획팀장
- 연구회 조원옥 감사부장, 이창준 감사담당
- 건축·에너지·KDI·대학원·농촌·보건·해양·형사(연) 감사부서장 등 8인

##### 2) 성과감사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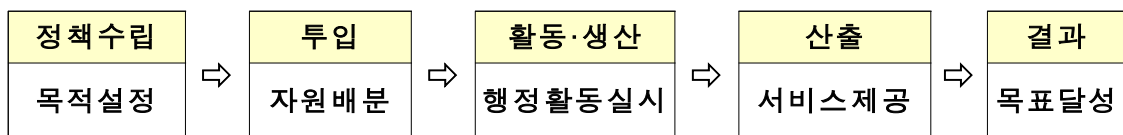
□ 미국의 現 감사체제

- 성과감사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간략하게 미국의 전반적인 現 감사체제에 대해 설명
- 미국은 감사원(GAO,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)에서 정부 감사에 대한 모든 규정과 법을 제정
- 감사원은 산하 56개 부(Department)가 있고 각각의 수장이 있으며, 불법·비위 행위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담당
- 미국은 각 주정부(States)·카운티(County) 정부 및 시정부(City) 별로 감사국이 있으며 GAO에서 제정한 규정과 법에 따라 감사 활동을 진행하고 회계감사 및 행정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분야 담당

- 각 주정부(States)는 감사관(Comptroller)을 선발하는 방법이 주민 투표 또는 상·하원 의회 선정 등 상이
- 정부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성과감사업무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음

## □ 성과감사의 정의

- 성과감사란 경제성, 능률성, 효과성과 관련이 있는 감사이며 그 대상에는 정책, 사업, 조직, 기관운영이 포함
- 성과감사는 정부 정책의 진행사항을 나타내는 투입-산출 모델을 바탕으로 진행



## □ 성과감사의 목적

- 성과감사는 정부 정책이나 사업 등에 낭비와 비능률의 원인이 있는지,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 활동의 성과(performance)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둠
- 또한 공공 정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둠
- 경제성·능률성·효과성

- 경제성 : 투입하는 인적·물적 자원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

- ♦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고가구매하지 않았는가?
- ♦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?

- 능률성 : 산출/투입의 비율을 최대화하는 것을 뜻함. 즉,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의 산출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 또는 동일한 산출을 최소한의 자원으로 생산하는 것을 의미

- 더 낮은 생산비용이 드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었는가?
- 구입 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자원은 없는가?
- 제거해야 할 병목 현상은 없는가?
-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불필요한 중복은 없는가?
- 서로 다른 부서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잘 협조하고 있는가?

- 효과성 :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뜻함. 또한 효과성은 현명하게 지출하는 것(spending wisely) 또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(doing the right thing)을 의미

#### □ 성과감사와 합법성감사 비교

| 항 목                | 성과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법성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감사기준<br>(criteria) | · 효율성, 효과성, 경제성,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합규성(the legality and regularity) |
| 감사범위<br>(scope)    | · 조직과 행정 시스템을 포함하는<br>조직의 모든 활동                     | · 구체적 재정운영(financial operations)   |
| 감사방법<br>(methods)  | · 다양한 과학적 분석기법<br>·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<br>· 수감기관과의 협의 활성화 | · 문서 분석, 담당자 인터뷰 등                 |

#### □ 성과감사와 회계감사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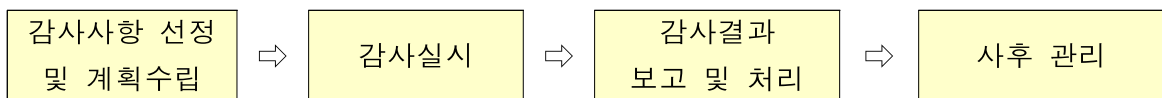
| 항 목 | 성과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회계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목적  | 정부의 관여가 경제성, 효율성, 효과성의<br>원칙에 합당하게 수행되었는지 평가 | 재무 운영이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는지,<br>재무제표와 자산 내역이 참인지,<br>거짓인지,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평가 |
| 초점  | 정책, 프로그램, 조직, 활동, 관리 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| 재무 교환, 계좌, 재무제표,<br>주요한 절차의 통제<br>(key control procedure)          |

| 항 목   | 성과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회계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방법    | 감사의 다양한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표준화된 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감사 원칙 | 감사인의 판단에 개방적, 개별 감사에 따른 기준의 특성                 | 감사인의 판단에 폐쇄적<br>법과 규정에 따라 표준화된 기준이 이미 확립되어 있음 |
| 보고    | 필요에 따라(ad hoc basis) 보고<br>구조와 내용이 그 목적에 따라 다름 | 연간 의견,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□ 성과감사의 종류

- 정책감사 : 정책의 일관성,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, 정책이 의도한 목표의 달성 정도, 정책 결정 절차의 적정성과 정책 결정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적정성 등
- 사업감사 : 해당 사업의 능률성·효율성·효과성 측정에 따른 당위성 감사
- 운영감사 : 기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

#### - 성과감사 절차





## □ 성과감사 점검 체크리스트

| 감사 단계    | 점검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획 단계    | ① 감사 목적과 감사초점의 적정성<br>② 감사 대상과 범위의 적정성, 감사 가능성<br>③ 감사에 따른 위험요소와 그에 대비한 계획의 적정성<br>④ 감사 판단기준의 적정성<br>⑤ 감사 방법론 설계의 적정성<br>⑥ 인력관리 계획의 적정성<br>⑦ 시간관리 계획의 적정성 |
| 실시 단계    | ① 실시과정에서 당초 감사실시 계획의 내용 중 감사초점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생겼을 때 변경의 적정성, 새로 설계한 계획의 적정성<br>② 자료의 수집과 관리의 적정성<br>③ 자료분석 방법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고서 작성단계 | ①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 수집 여부<br>② 사용된 방법론의 적정성<br>③ 개선대안의 실현가능성<br>④ 보고서가 감사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구성되었는지 여부<br>⑤ 감사 목적과 대비하여 결론이 적정한 지 여부<br>⑥ 처리방향과 권형의 적정성      |

### 3) 국제성과감사센터(ICPA) 주요 업무 및 역할

#### □ 국제성과감사센터 개요

- 전 캔자스시 시장인 Mark Funkhouser와 서울대 문호승 감사 등이 공동대표로 2009년 설립
-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성과감사기구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에 기여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국제적 이슈와 사례를 바탕으로 성과감사의 확산 및 연구를 위한 회의, 교육, 연구 등을 수행

#### □ 국제성과감사센터 연혁

- 1978년 테네시주(states) 성과감사업무를 시작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성과감사에 대한 개념·이론이 정립되지 않았음
- 시정부(city), 주정부(states), 연방정부(national)의 성과감사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데 주력
- 연방정부를 방문하여 성과감사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후 성과감사에 대한 기준 정립
- 1988년 캔자스시시의 성과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89년 시정부 차원의 성과감사협회 창립(회원수 75명)
- 성과감사협회는 Quality Magazine을 연 4회 발간하여 성과감사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 회원 규모 약 400여명으로 증가
- 이러한 성과감사협회의 활동으로 인해 2000년부터 미국의 시정부·주정부에서도 성과감사부서가 생겼고 현재는 대부분의 지방정부에도 성과감사부서가 존재
- 2008년에는 IIA에서 Grant를 받아 한국을 포함한 10개 국가의 성과감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, 그 결과 모든 나라의 성과감사에 대한 어려움은 비슷한 상황임을 확인

- 특히 성과감사 전문인력을 ‘채용→교육→원활한 직무수행’의 프로세스에 맞게 양성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으며, 성과감사 결과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관건이었음
-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성과감사의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9년 캔자스시티에서 60여 개국 감사원 관계자들과 함께 창립대회를 열고 국제성과감사센터(ICPA)를 설립
- 현재는 조지아 주립대학과 함께 미국의 성과감사에 필요한 감사인의 요건, 직무기술 등에 대한 조사·연구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
- 조사가 완료되면 조지아 주립대학에 성과감사학과를 설립하여 성과감사 전문자격증제도 신설 예정

## □ 국제성과감사센터 주요 기능 및 주력 업무

- 연구 및 교육훈련(Research & Training)
  - 다양한 기능과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동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
  - 그러나 회원들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활용한 컨설팅 사업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성과감사 용역사업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적 안정을 확보함
  - 전문연구 및 훈련기관으로서 성과감사에 대한 이론적·실용적 연구와 충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과감사의 발전을 이끌고 있음
  - 각 국의 감사원, 자체감사부서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약정(MOU)을 체결하여 성과감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동안 연구원(Researcher)으로 파견 받아 성과감사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협력방안 추진 중임

o 홍보 및 지지기반 확대(Advocacy & Promoting)

- 성과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홍보활동 및 성과감사 지지기반 확대(Advocacy & Promoting) 기능 수행
- ICPA는 주기적으로 성과감사의 새로운 이론과 주요 감사결과 등 이슈를 정리하여 이메일 또는 유인물을 통해 회원은 물론 주요 국가 감사원, 의회 등 선출직 공무원 및 비영리단체 등에 제공하는 업무 수행

o 컨설팅 및 감사대행(Consulting & Auditing) 기능

- 각국의 감사원 등 성과감사 관련 단체들이 발주하는 컨설팅 및 성과감사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
- 주요 민간재단 및 현재 감사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각종 비영리단체 (Non-profit Organization)의 사업에 대하여 ICPA가 성과감사 실시

o 네트워킹 및 중개(Networking & Brokering) 기능

- 성과감사 이론·실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와 각 국의 성과감사 매뉴얼 및 감사결과 등이 회원들을 통해 ICPA의 Data-base에 축적되어 성과감사인들 간의 정보공유와 교류가 활성화

## □ 질의 및 답변

Q1. 2008년도에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의 성과감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했는데, 한국의 성과감사에 대한 조사결과는 어떠했나?

- 한국의 성과감사는 개념적 정립 등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, Social-issue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국 감사원의 태도는 매우 흥미로웠음
- 한국 포함한 10개국에 대한 조사결과,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점
  - 직원을 선발하고 교육시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
  - 성과감사에 관한 교육 기관(학교) 부재
  - 감사결과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

Q2. 성과감사 관련 Training을 하기 위한 기존 전문가 pool은 충분한지?

- 본인을 포함하여 세계 각지 감사원의 감사인들은 professor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고 인력 또한 많음

Q3. 성과감사의 성공적 사례를 몇 가지 말해줄 수 있는지?

#### <사례 1> 캔자스시티 전기효율성 문제 해결

- 미국 캔자스시티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그 결과 거리의 가로등이 가장 불편하다는 결과를 도출
- 이에 대해 감사 부서는 관련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캔자스시티 가로등에 사용되는 전구가 에너지 효율 및 성능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타 시(city)와 비교 분석한 결과, 전기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전기담당 업체에 개선을 요구함
- 하지만 전기담당 업체는 전기사용량이 많아야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함
- 이에 감사 부서는 시(city)의 전기운영을 외부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함
- 결국 캔자스시티는 100만 달러에 시(city) 전기운영권을 업체로부터 사들였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가고 경비는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됨

#### <사례 2> 킹카운티 경찰 시스템 문제점 해결

- 킹 카운티는 경찰관이 유색인종 시민들을 차별 및 탄압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
- 킹 카운티 내부에는 감사국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
- 원인 분석 결과, 킹 카운티 정부 내부에 이권에 의한 결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, 이로인해 감사국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

- 감사단은 시의회에 이러한 조직적 문제를 감사결과보고서에 적시하여 제출하였으며, 결국 오랜 노력 끝에 시민투표를 통해 경찰조직시스템을 변경하는 안이 통과됨
- 그 결과 킹 카운티 내, 경찰의 유색인종 탄압 문제가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됨

Q4. 성과감사는 감사결과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,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?

- 성과감사 결과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
-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안제시를 하는 것에 대한 제한점은 성과감사의 오래된 문제임
- 하지만 유사한 부분과의 비교분석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
- 다만 대안제시를 위해서는 ‘Evidence → 대안제시 → 설득 → 감독’의 과정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함

#### 4) 국제성과감사센터(ICPA) 방문 시사점

##### □ 출연(연) 감사 현황

- o 최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, 「청탁금지법」 시행에 따른 자체 감찰 및 감사 기능 확대 요구 등 사전예방적 감사기능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
- o 출연(연) 자체감사기구인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기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며, 감사부서 임원인 비상임감사 체제 하에 별도 편제되어 독립적으로 감사업무 수행
- o 비상임감사는 독립적 감사 역할이 사실상 제한적이며, 합법성 감사 및 내부 감찰에 국한되어 본연의 임무 수행에 한계 발생

- 기관별 자체감사가 독립적·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제도 보완 등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 역할강화 추진 필요

#### □ 국내 기관 성과감사 현황

-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을 2005년 9월 출범하여 회계감사·성과감사·직무감찰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·개발과 자체감사기구 등 감사인프라 구축지원 기능에 힘쓰고 있음
- 감사원은 국가재정법에서 부여한 권한으로 2009년부터 매년 각 부처의 성과보고서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정사업 또는 정책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있음
  - \* 2011년 대학재정감사를 통해 대학등록금 결정요인 분석 및 등록금과 교육의 질 간의 관계 규명 등

#### □ 방문 시사점

- 성과감사란 경제성, 능률성, 효과성과 관련 있는 감사로써 분야별로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책·사업·조직·기관운영 등 포괄적, 적극적 감사 기법
- 현행 감사결과 처분은 예산, 결산, 인사 등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위주로 진행되며 정책반영 등 적극적 감사는 미흡한 실정
- 이러한 이유로 감사결과 후 실무담당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나, 성과감사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 해결 가능
- 출연(연) 사업의 적정성·실적 및 연구결과의 정책기여도 등에 대한 feed-back 역할과 개선기능으로 성과감사가 대안이 될 수 있음
- 내부감사인은 성과감사에 대한 전문교육 참여를 통해 전문성 배양 필요

## 2. 국제통화기금(IMF, International Monetary Fund)

### 1) 회의개요

#### ① IMF 독립평가실(IEO, Independent Evaluation Office) 회의

□ 일 시 : 6. 23.(금) 09:00~10:00

□ 장 소 : 국제통화기금(IMF) 회의실

□ 참석자 : 13명

- o Charies Collins, Director, 국제통화기금 독립평가실(IEO)
- o Ruben Lamdany, Duputy Director, 국제통화기금 독립평가실(IEO)
- o 국무조정실(법무감사담당관실) 김양수 기획팀장
- o 연구회 조원옥 감사부장, 이창준 감사담당
- o 건축·에너지·KDI·대학원·농촌·보건·해양·형사(연) 감사부서장 등 8인

#### ② IMF 내부감사실(OIA, Office of Internal Audit & Inspection) 회의

□ 일 시 : 6. 23.(금) 10:00~12:00

□ 장 소 : 국제통화기금(IMF) 회의실

□ 참석자 : 14명

- o Anand Seshadru Balakrishnan, Audit Manager, 국제통화기금 내부감사실(OIA)
- o Benjamin Fosu, Audit Manager, 국제통화기금 내부감사실(OIA)
- o Packiaraj Nurugan, Senior Audit Manager, 국제통화기금 내부감사실(OIA)
- o 국무조정실(법무감사담당관실) 김양수 기획팀장
- o 연구회 조원옥 감사부장, 이창준 감사담당
- o 건축·에너지·KDI·대학원·농촌·보건·해양·형사(연) 감사부서장 등 8인



## 2) 국제통화기금(IMF) 회의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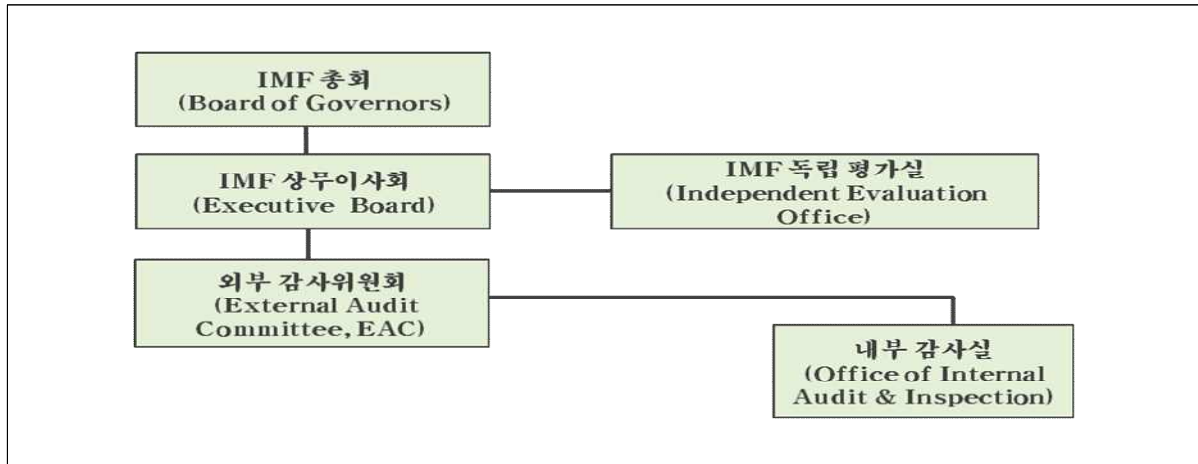
### □ 기관 개요

-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, 소득증가, 생산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5년 설립
-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을 지도·감독하는 임무를 담당
- 정규직 약 3,000여명, 비정규직 약 1,0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, 26개의 Major Division으로 구성

### □ IMF의 주요 기능

-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에 대한 감시기능
  - IMF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가맹국의 환율정책을 점검하고,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국제통화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
- 국제수지 조정자금의 지원
  -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에 직면한 가맹국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국제준비자산 재건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국 통화가치를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
- 재정 지원(구제금융)
  - 회원국들의 특수한 사정에 의한 재원 지원 요청 시 구제금융 지원 및 컨설팅 업무 수행
  - \* 구제금융 지원시 기본수수료, 선약정수수료, 인출수수료 등을 부과

## □ IMF 조직별 소개



[IMF 감사 관련 조직도]

### o IMF 총회(Board of Governors)

#### - 기 능

- IMF 총회는 중요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

#### - 구 성

- 각 가맹국이 임명한 위원과 대리위원 각 1명씩으로 구성. 대부분의 가맹국들은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를 위원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, 대리위원은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고 있음

### o IMF 상무이사회(Executive Board)

#### - 기 능

- 원칙적으로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의결기구이나 실제로는 IMF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

#### - 구 성

- 상무이사회는 상무이사(Executive Director : ED)로 구성. 미국, 일본, 독일, 영국, 프랑스 등 5대 쿼터국이 각 1명씩 지명한 5명의 지명이사와 기타 가맹국의 19개 그룹이 1명씩 선출한 19명의 선출이사를 더하여 24명으로 구성되며 상무이사회 의장은 총

## 재가 맡음

### o IMF 독립평가실(Independent Evaluation Office)

#### - 기 능

- IEO는 IMF 관련 문제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담당
- IEO는 2001년 설립된 IMF 상무이사회(Board of Executive)직속 기관으로, 독립적 내부 평가 부서

#### - 목 적

- 독립적으로 IMF 내부를 평가 후 최종 운영진에 보고하는 것
- 과거 IMF의 활동 과정을 평가하여 미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것
- IMF의 외부 위상을 제고하는 것
- \* 1997년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, 2008년 미국 경제위기, 2010년 유럽 경제위기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세계 경제위기를 예방하고 IMF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

#### - 구 성

- 약 15명의 직원이 근무하여, IEO 국장은 상무이사회가 임명. 임기는 3년이며 3년 연임 가능
- IEO 국장은 소속 직원을 독립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, 80% 이상이 IMF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으로 배치됨. IEO 소속직원은 IMF와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결재 절차는 IEO 내부에서만 이루어짐
- IEO의 예산은 상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IMF와는 별개로 예산요구절차 및 집행절차가 이루어짐
- IEO는 평가 보고서, 연차 보고서, 보도 자료 및 기타 공개 성명서 작성에 대해 개별적 책임을 가짐

#### - 업 무

- IMF의 감독 책임과 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해 상무이사회에 주기적으로 감사보고서와 현안 보고서를 작성
- IEO의 평가보고서는 IMF가 금융시장의 위기 요소를 식별하지 못하고, 조기경보

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분석적, 조직적 장애 요인들을 찾아내고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- IMF 내부의 분석적 결함, 조직적 장애요소, 내부 지배구조 문제, 정치적 제약 등 4개 범주로 나누어 감사하며 원인들을 분석함

- 업무 Process

- ① Topic 선정 : 정부기관, 경영진, 학계, 시민 등의 반응을 고려  
10~20개 Topic 선정 후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 1개 선정
- ② Team 구성 : Topic 담당자 지정 및 Staff 선정 등
- ③ 계획서 제출 : 1~2개월 소요
- ④ 계획서 점검 : IEO 내부에서 점검
- ⑤ 자료 조사 : IMF 내부직원 인터뷰, 해당국가 담당자 미팅, survey 등
- ⑥ 전문가 회의 : 전 세계 해당분야 전문가 협의 및 토의
- ⑦ Project Report 작성
- ⑧ Project Report 및 해결방안 이사회 보고
- ⑨ IMF 내부 실천 계획서 작성(해당 부서)
- ⑩ 실천사항 상시 점검(내부감사실(OIA))

o 외부감사위원회(External Audit Committee)

- EAC는 외부감사 협의체로써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. 외부감사기관을 활용한 회계감사와 내부 합법성감사를 수행
- IMF 상무이사회에서 임명하며, IMF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됨
- 연간감사결과보고서 및 회계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임·직원들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적 기능 수행
- 내부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개선 및 사내 홍보 역할 수행

o 내부 감사실(Office of Internal Audit & Inspection)

- 기 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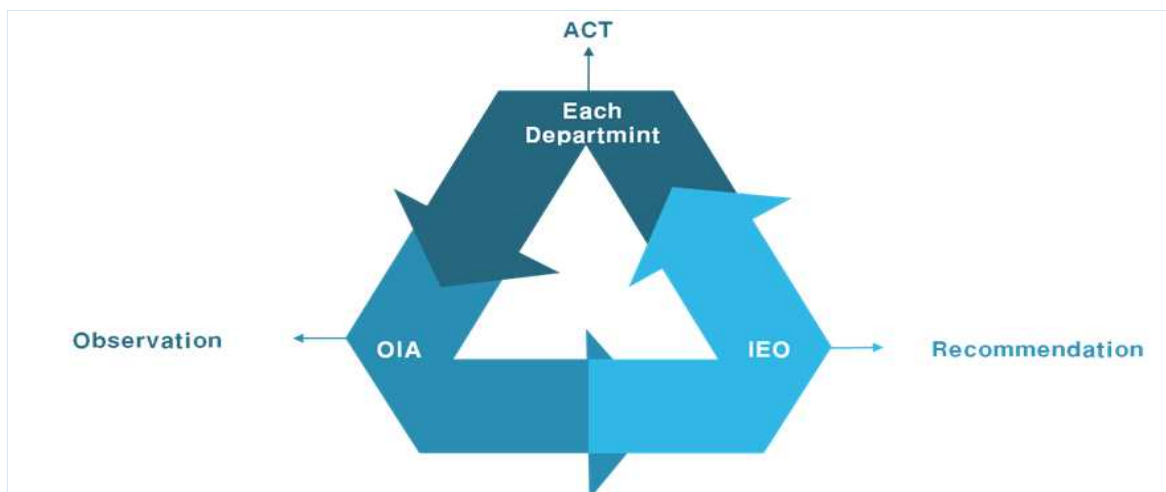
- 상무이사회(Executive Board) 직속 외부감사위원회(EAC)가 있으며 내부감사실은 Managing Director 및 외부감사위원회 산하에 위치
- Managing Director 뿐만 아니라 EAC에도 결과보고를 하므로 감사의 독립성 유지 가능

- 구 성

- OIA는 Director 및 약 16명의 직원이 있으며, 주로 외부전문가(Subject-Matter Experts)와 함께 업무를 진행
- 외부전문가들은 CPA, IT 관련 전문가 및 변호사, 교수 등으로 구성

- 업 무

- OIA는 직접적인 감찰 활동은 하지는 않지만 각 부서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Guide 역할 수행
- 감사를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결과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IEO와 협의하여 업무 진행
- IEO에서 제시한 Recommendation이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Observation 역할 수행



[OIA-IEO 협업 체계]

- 1년에 한번씩 Program을 development하는데 IMF의 미래 전략 및 계획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상황과 미래 예측 또한 담당
  - IMF 내부의 Risk Management Unit(RMU)과 업무교류를 통해 미래예측 및 위험도 측정
  - \* IMF가 특정국가에 자금을 지원하면 1차적으로 해당부서가 자금운영에 대해 확인을 하지만 OIA 또한 자금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함
- OIA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6가지 고려사항
- 업무 프로그램 형성과 업무 식별에 있어 효율적인 사고방식 개발
  - OIA의 역할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설계
  - 팀 내의 기량(내적, 외적)과 경쟁력의 적절한 조합을 장려하고 개발
  - 창조적이고 효과적으로 도구 사용(예-데이터 분석 및 벤치마킹)
  - 보증 활동에 중점을 둔 ‘컨설팅’의 균형 유지
  - 업무 소요 시간과 (보고)서식에 있어 유연성과 창의성 입증

## □ 질의 및 답변

Q1. IMF와 미팅을 하면서 출연(연) 감사부서와는 다르게 감찰 및 감사 업무가 부서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인상을 받음. 설명을 해준다면?

- OIA는 내부 각 Department가 수행하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서임. IEO나 예산부서, 감찰부서 등 또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
- 다시 말하면,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한 부서만이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여러 부서가 수차례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

Q2. 내부적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지,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감사를 실시하는지?

- 회계감사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 1회 실시하지만 OIA의 감사업무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실시될 때, Risk를 확인하고 효율성을 점검하는 등 상시적으로 실시됨

Q3. OIA 직원은 내부에서 선발하는지?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구성하는지?

- 외부에서 초빙하기도 하고, IMF 내 승진을 통해서도 선발
- 업무량에 비해 직원은 16명 정도로 부족한 인원이지만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 등에 의해 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자문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음

Q4. 다양한 부서들이 평가·감사업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피감 부서의 협조를 얻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한지?

-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 요구 등에 대해 어려움은 전혀 없으며 상세한 설명이 수반된다면 피감부서에서도 기꺼이 자료를 제공함

Q5. 출연(연)의 감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내부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이 뒤따름. OIA의 감사는 어떠한지?

- IMF 안에서는 OIA가 Senior division과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타부서의 반발이 심하지 않고, OIA의 감사는 타부서와 협조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고 잘해나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출연(연) 감사와는 차이가 있음
- 또한 비윤리적 행위와 자금비위행위 등을 조사하는 내부 감찰부서(Investigate Department)가 있기 때문에 OIA의 감사업무와는 차이가 있으며 감찰기능과 감사기능이 분리되어 있음
- OIA는 운영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함

### 3) 국제통화기금(IMF) 내부감사실 방문 시사점

- o IMF는 감사관련 부서의 체계적으로 분업화된 조직구성을 통해 내부 평가 및 감사활동이 완벽히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감사에 대한 타 부서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감사조직 위상 제고 가능
- o 또한 평가부서(IEO)와 감사부서(OIA), 기타 부서(Each department) 간 업무 Flow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
- o 내부 평가·감사·감찰 업무가 부서별로 분업화 되어 있어 업무 loading을 줄일 수 있고 전문성 배양이 가능했음

- IMF의 조직화된 업무 Flow를 벤치마킹하여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평가·감사업무 등을 분야별로 전문화(전문가 채용)하는 것이 시급
- 국무조정실과 연구회, 출연연구기관 간 분업과 협업체계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유기적 체계 강화 필요



### 3. 뉴욕시 보건복지부(NYC, DOHMH)

#### 1) 회의 개요

□ 일 시 : 6. 26.(월) 09:00~12:00

□ 장 소 : 뉴욕시 보건복지부(NYC DOHMH,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) 회의실

□ 참석자 : 17명

- o Sara Packman, Assistant Commissioner, 뉴욕시 보건복지부 감사국
- o Mahbuba Choudhury, Audit Director, 뉴욕시 보건복지부 감사국
- o Mario Lee Gonzalez, Audit Manager, 뉴욕시 보건복지부 감사국
- o Ayoade Adejumo, IT Audit Manager, 뉴욕시 보건복지부 감사국
- o Younghoon(Jacob) Kim, Auditor, 뉴욕시 보건복지부 감사국
- o Noha Banna, Auditor, 뉴욕시 보건복지부 감사국
- o 국무조정실(법무감사담당관실) 김양수 기획팀장
- o 연구회 조원옥 감사부장, 이창준 감사담당
- o 건축·에너지·KDI·대학원·농촌·보건·해양·형사(연) 감사부서장 등 8인

□ 회의 세부일정

| 시 간  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09:00 ~ 9:20  | <p>◆ 연구회 발표</p>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출연(연) 감사활동 소개<br/>조원옥 감사부장(경제·인문사회연구회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:20 ~ 11:00  | <p>◆ NYC DOHMH 발표</p>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국 정부구조의 간략소개<br/>뉴욕시 보건복지부 및 감사국 소개<br/>감사국의 예산승인 절차소개<br/>Sara Packman, Assistant Commissioner(NYC DOHMH)</li> <li>뉴욕시 보건 복지부 감사국 감사 프로그램 소개<br/>뉴욕시 보건복지부의 외부감사 관련 소개<br/>Mahbuba Choudhury, Audit Director(NYC DOHMH)</li> <li>뉴욕시 보건복지부의 부패방지 프로그램 소개<br/>Ayoade Adejumo, IT Audit Manager(NYC DOHMH)</li> <li>효율적인감사프로그램 소개<br/>감사 후 권고사항의 후속조치<br/>Mario Lee Gonzalez, Audit Manager(NYC DOHMH)</li> <li>감사국의 자치권과 독립성<br/>감사국의 인사정책 및 감사교육 소개<br/>Noha Banna, Auditor(NYC DOHMH)</li> </ul> |
| 11:00 ~ 12:00 | ◆ 질의·답변 및 감사활동 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:00 ~ 12:20 | ◆ 마무리 및 사진촬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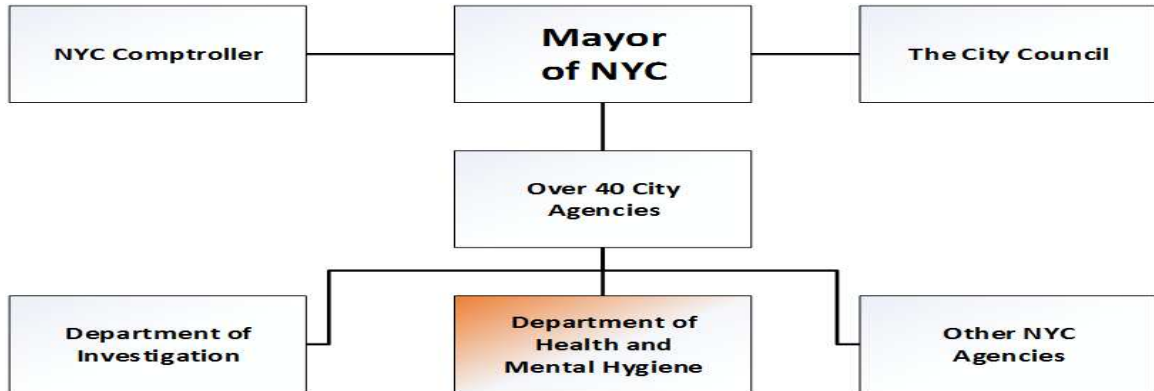
## 2) 뉴욕시 보건복지부(NYC, DOHMH) 회의 내용

### □ 기관 개요

- o 1866년 설립된 뉴욕시 산하 공공기관으로, 1년 예산 약 1조 8,000억원 규모이며 약 6천여명이 상근으로 근무
- o 인구 약 800만 명의 뉴욕시 거주자를 위한 공중보건기관으로써 외식 업체 품등 검사, 애완견 면허증 및 분실 관리, 무료 보건진료소 운영, 출생증명서 관리, 질병 연구 등을 담당

### □ 구 성

- o 보건복지부 장관 아래 제 1차관, 법률상담부서, 비서실장이 있음
- o 12개의 부서 중 4개의 부서는 1차관 소속, 8개의 부서는 장관 소속으로 해당 상관에게 최종보고
- o 감사국은 제 1차관 소속



[뉴욕시(NYC) 조직도]

### □ 기 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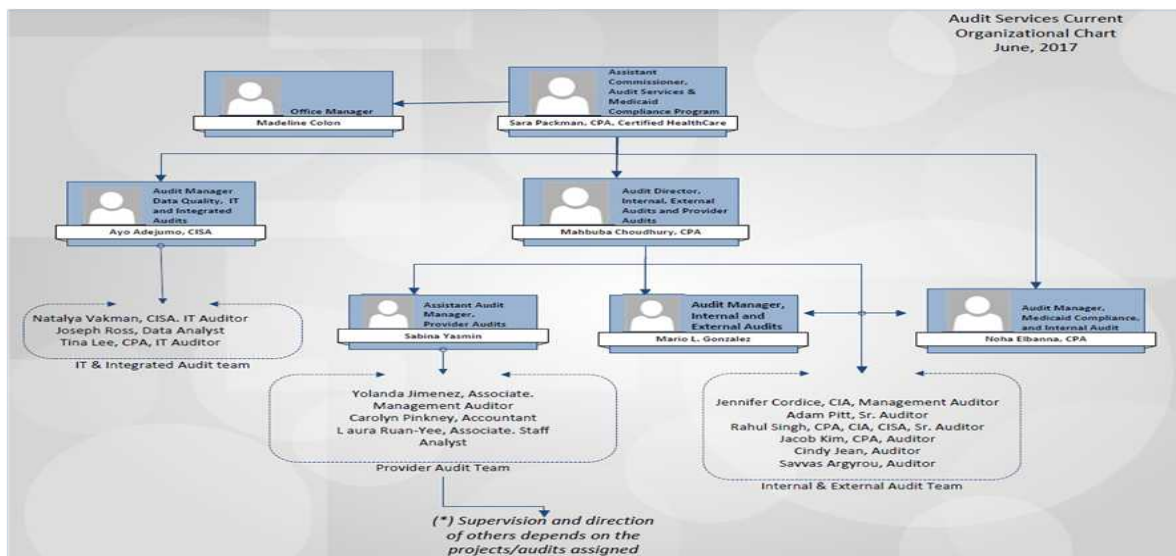
- o 식품위생 관리
  - 뉴욕시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기준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적합성을 확인
- o 보건소 운영

- 뉴욕시 보건복지부 클리닉에서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성 건강, 예방 접종 및 결핵(TB) 서비스 제공
  -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 및 결핵환자의 치료 지원
  - 공중 보건 실험실을 운영하며 각종 질병들을 실험하여 질병 창궐예방 및 대응
- o 보육시설 운영
- 보육 시설 인·허가 및 정기적 검사

## □ 뉴욕시 보건복지부(NYC, DOHMH) 감사국

### o 구 성

- 제 1차관 소속으로 총 19명의 인원이 근무
- 감사실장(차관보)과 감사실장을 지원하는 비서가 있음
- 감사실장 밑으로 1명의 감사부장과 4명의 감사과장이 있음
- 그 밖에도 3명의 감사대리와 9명의 일반 감사관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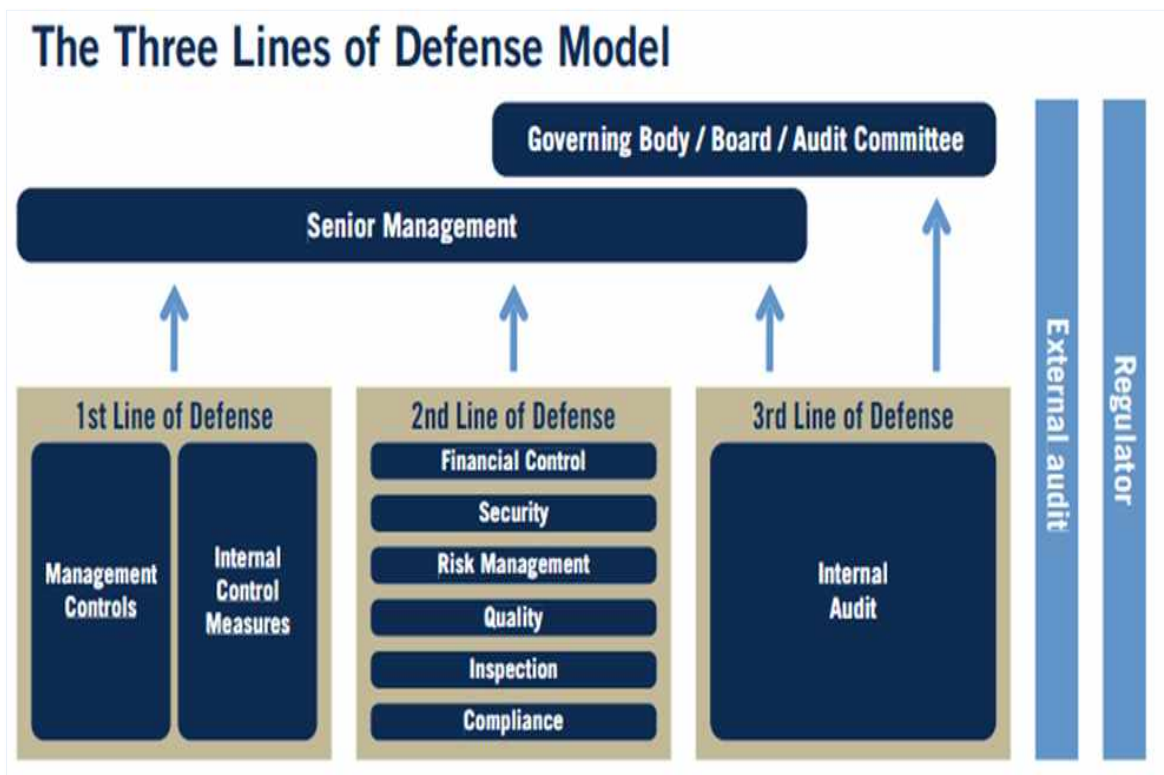


## [뉴욕시 보건복지부(NYC, DOHMH) 감사국 조직도]

### o 주요 업무

- 내부감사
  - 뉴욕 시 보건복지부 사업과 외부 계약 등에 대한 회계 및 준법 감시
  - 기관 전반에 걸친 내부 통제 및 반부패 통제에 대한 자체 평가 조정

- 연방정부 법규 요구사항 준수 모니터링
- 외부 감사
  - 연방, 뉴욕주, 뉴욕시 감독기관이 수행하는 외부 감사에 대한 중간자로서 조정 역할 수행
- 메디케이드 규정 준수 프로그램(Medicaid compliance program)
  - 뉴욕 시 보건복지부의 메디케이드 규정 준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제 준수 감사 및 모니터링
-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 프로젝트 수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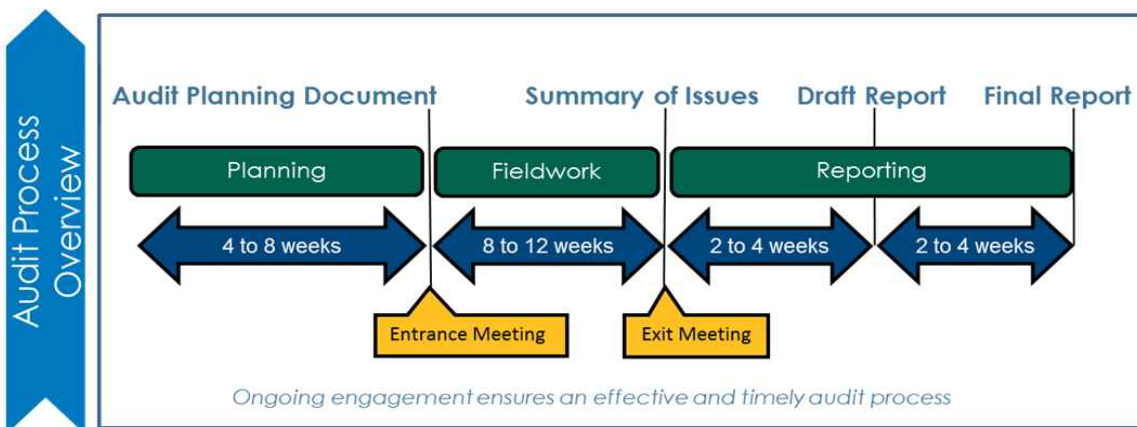
[뉴욕시 보건복지부(NYC, DOHMH) 감사국 업무체계]

#### o 감사 process

- 계획단계(4-8주 소요)
- 실사단계(8-12주 소요)
- 리포팅단계-최종감사보고서 발행(4-8주 소요)

#### o 감사 계획 process

- 보건복지부 실시 프로그램의 다양한 위험요소 평가를 기반으로 연간 감사 계획 실시
  -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위험요소
  -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
  - 재무적인 위험요소
  - 운영에 관한 위험요소
- 감사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
  - 사용 가능한 인적/물적 자원
  - 감사프로그램의 실제 유효성
  - 감사 실시
  - 외부 감사
  - 특별한 요청



[뉴욕시 보건복지부(NYC, DOHMH) 감사국 감사 Process]

- o 뉴욕시 보건복지부의 외주업체들에 대한 감사
  - 감사국은 뉴욕 시 보건복지부의 모든 계약업체들을 대상으로 매 3년마다 회계감사 수행
  - 감사수행은 뉴욕 시내에 등록된 회계법인들을 통해 실시
  - 타 업체보다 빈번하게 감사를 받는 경우
    - 과거에 실시된 외부 독립감사결과 중요한 내부 통제 및 규정에 결함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거나 감사보고서의 감사인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

- 전년도 감사의 결과로 적발된 불법비용이 5,000달러 이상인 경우

#### o 뉴욕시 보건복지부의 IT를 기반으로 한 부패방지 프로그램

- 적절한 예방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 등을 관리
  - 적절한 승인 수준에 따라 시스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거나 수정하는 공식 프로세스 마련
  - 이전되거나 분리된 사용자에게 대한 액세스를 비활성화 하기 위한 공식적인 프로세스 마련
  - 사용자, 관리자 및 타사 공급 업체의 정기적인 액세스 검토 수행
  - 복잡한 암호체계 사용
  - 특수한 경우(예 : 서버, 데이터베이스, 응용 프로그램 및 인프라)에는 권한이 부여된 직원만으로 제한
  - 허가된 요원만이 보안 구역 및 컴퓨터 시설에 접근 할 수 있음

#### o 감사 서비스 추적 시스템 (ASTS)

- DOHMH는 ASTS라는 Microsoft Dynamic Platform을 기반으로 하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감사시스템을 사용
- 감사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감사 클라이언트와 통신하고 고위 경영진에 대한 감사 및 상태 보고서 생성
- 감사결과 이행실태에 대해 완료된 사항과 미완료된 사항을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
- 감사에서 적발한 이슈 설명, 시정 조치 계획 (CAP), 시정 조치 상태 (공개 / 해결), 위험 수준 (높음 / 중간 / 낮음) 및 시정 조치 시행 목표와 같은 핵심 정보를 상세히 설명

#### o 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방안

- 감사업무의 모든 보고체계는 제1차관과 최고경영자로 일원화

## □ 질의 및 답변

### <공동조사단 질의>

Q1. 감사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과 계약을 통해 외부업체 감사를 대행한다고 했는데,

그 과정 및 신뢰도를 유지하는 방안은?

- 불특정 다수의 회계 법인들이 계약을 위해 지원을 하게 됨. 뉴욕시는 이 회사의 명성과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해서 계약. 최종 선정된 법인을 1등부터 8등까지 나눠서 높은 순위의 법인이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
- 또한 이와 관련된 내부적인 규정이 있음. 최종선정이 된 후 A기업에 대해 조사를 할 일이 생겼을 경우, 두 대상(회계법인과 피감업체)이 현재와 과거에 관계가 있는 지를 따지게 됨. 과거에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, 현재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확실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음

Q2. 뉴욕시 보건복지부(DOHMH) 감사국의 권한은 어떻게 부여되며, 외주업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?

- 뉴욕시 감사원법에 따르면 모든 City agency에는 감사를 하게끔 하는 뉴욕 시행령이 있음. 그것으로 첫 번째 권한 받게 됨. 두 번째는 뉴욕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권한을 부여받음(장관은 뉴욕 시장에게서 권한을 부여받는 것). 우리는 뉴욕시에서 일하는 뉴욕시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뉴욕 시장을 따르게 됨. 거기서 권한을 부여받는 것
- 외주 업체의 경우 계약서상에 외부감사(회계법인에 의한)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, 외부감사 후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시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적시
- 외부감사 상 문제가 발생되어 fire된 업체는 향후 뉴욕시 업무를 입찰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제공됨

Q3. 감사 관련 직원을 채용 절차와 특별히 갖추어야 될 요건 등이 있는지?

- 감사직원을 채용할 때 뉴욕시 정부 기관 중 하나인 Department of Investigation에서 채용 대상에 대한 사전조사를 함. 범죄기록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살았던 거주지에 가서도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등 디테일하게 검증. 이웃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됨

Q4. 미국의 공무원들은 부패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?

- 뉴욕시 내 ‘부패방지이사회’가 구성되어 있음. 뉴욕법령 68조항에 따르면 뉴욕시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을 수가 없음. 한사람에게 1년에 50불 미만으로만 선물을 받을 수 있음(콘서트 티켓, 식사 등 일체). 50불 이상 넘어가면 처벌을 받게 됨

<뉴욕시 보건복지부(DOHMH) 측 질의>



Q1.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부터 「청탁금지법」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. 법 시행 전과 후의 차이점 및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?

- 법 시행 이전 한국의 공직자들은 기관별 내부 ‘행동강령’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음. ‘16년부터 「청탁금지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패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음
- 현재 참석하고 있는 감사실장들은 각 기관의 ‘청탁방지담당관’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 법 시행 초기에는 법령 해석의 기준이 모호하여 자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고,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도 수준이었음. 그 외에는 민간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음. 하지만 여러 노력을 통해 점점 좋아지고 있음

Q2. 출연(연)은 IT환경 내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감사활동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있는지?

- 출연(연)은 재정정보시스템 및 기관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상감사 및 법인카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음
- 일상감사는 100만원 이상의 지출 및 계약 등에 대한 내부 결재진행 시 감사부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 활동 중 하나임
- 법인카드모니터링 시스템은 기관별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특정 검출 요건을 설계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임
- 하지만 출연(연)은 뉴욕시 보건복지부(DOHMH)의 ASTS시스템과 같이 모니터링·보고서작성·감사결과에 대한 관리 등의 활동을 총괄적으로 support 해주는 IT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음

### 3) 뉴욕시 보건복지부(NYC, DOHMH) 방문 시사점

#### □ 효율적 감사조직 운영 방안

- o 감사인력 채용 시,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 확보
  - \* 뉴욕시 보건복지부는 年 예산 1조 8000억원, 인력 6,000여명에 이르는 정부기관이지만 단 19명의 감사전문인력으로 효율적 운영
- o 외부 감사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해 기관운영 및 사업심의 등 감사대상 소 분야에 대해 적

극 활용함으로써 감사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

- o 장기적으로 출연(연) 감사부서 통합운영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가능
- o 출연(연) 감사조직은 1~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문인력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관 간 협동감사를 활성화하고 외부기관 및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감사활동의 질적 향상이 시급

## □ 자체감사 시 소 부서 합동 공개회의 절차 도입

- 현행 자체감사 시 감사요구자료에 대해 수감부서 이해관계에 따라 미제출 등 비협조적 행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미흡
- 수감대상 소 부서와 공개회의를 통해 감사 협조사항을 공개 토론하고 상부 보고체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유연한 감사분위기 조성

## □ IT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사활동 체계화

- 뉴욕시 보건복지부(DOHMH)는 감사서비스 추적시스템(ASTS)를 활용하여 감사모니터링, 감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, 감사결과 관리 등의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
- 출연(연)은 재정정보시스템 및 기관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일상감사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감사업무 전반에 걸친 활용도는 미비한 수준
- 향후 관련부서 및 기관間 협의를 통해 IT 기술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지원한다면 감사업무의 효율성·능률성이 향상될 것임

※ 뉴욕시 보건복지부는 향후 연구회 및 연구기관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제안